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5-160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현재 조례에 규정된 재활용 품목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정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을 표준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로 자원화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배출요령을 반영하여 종량제 폐기물의 감량을 추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재활용가능품 품목의 배출 요령 규정 일부 개정(별표 2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폐기물관리법」

2)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3)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5. 10. 10.~2025. 10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## 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 요령(제2조 제8호 관련)

품목	세부품목	배출요령
가. 종이류	· 골판지상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닐코팅 부분,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·철핀,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</li> <li>-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</li> </ul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※ 비해당 품목 :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,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</p>
	· 종이팩 (살균팩, 멸균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</li> <li>- 빨대,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</li> <li>- 다른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배출</li> </ul>
	· 신문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</li> <li>- 비닐코팅된 광고지, 비닐류,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</li> </ul>
	· 책자, 노트, 전단지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닐 코팅된 종이, 공책의 스프링,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</li> </ul>
	· 종이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</li> </ul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※ 비해당 품목 :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</p>
나. 합성수지 비닐류	· 기타 종이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,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</li> </ul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※ 비해당 품목 :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, 택배전표, 영수증 감열지, 사진용지, 종이호일, 색지, 사용한 화장지, 방수 가공 포스터 등</p>
	· 비닐포장재, 1회용 비닐봉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</li> <li>-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</li> </ul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※ 비해당 품목 :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, 식탁보, 고무장갑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/ 장판, 둋자리, 섬유류 등(천막, 현수막, 침구류 등)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신고</p>

품목	세부품목	배출요령
다. 금속캔	· 음료 · 주류캔, 식료품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</li> <li>-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</li> <li>-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</li> </ul>
	· 기타캔류 (부탄가스, 살충제용기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</li> </ul> <p>*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</p> <p>* 비해당 품목 :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(락카, 페인트통 등)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또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수거신청</p>
라. 유리병	· 음료수병, 기타 병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</li> <li>-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</li> <li>-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</li> <li>-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</li> </ul> <p>* 비해당 품목 : 깨진 유리제품(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) /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, 내열 유리제품, 크리스탈 유리제품, 판유리, 조명기구용 유리류, 사기 · 도자기류 등(특수규격마대 배출 혹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)</p>
마. 발포 합성 수지	· 스티로폼 완충재 (농 · 수 · 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,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</li> <li>-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</li> <li>-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</li> </ul> <p>* 비해당 품목 :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, 건축용 내 · 외장재 스티로폼,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</p>
바. 합성수지 용기 · 트레이 이류	· PET 용기(병을 포함한다) · 트레이류 · PVC, PE, PP, PS, PSP 재질 등 의 용기 · 트레이류 (분리배출 표시가 된 플라스틱 음료 및 세정용기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</li> </ul> <p>*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(치약용기 등)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착상표,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</li> <li>-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</li> </ul> <p>* 비해당 품목 :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 · 문구류, 옷걸이, 파일철, CD · DVD 등은 특수규격마대 배출 / 낚싯대, 전화기, 유모차 · 보행기 등은 대형폐기물로 배출신고 / 칫솔 등은 종량제봉투 배출</p>

품목	세부품목	배출요령
사. 무색 폴리 에틸렌 테 레 프탈레이트 (PET)병	· 무색 투명한(PET) 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(라벨)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</li> </ul> <p>※ 설탕,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행군 후 배출</p>
아. 고철류	· 고철(공기구, 철사, 못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</li> </ul>
	· 비철금속(알미늄, 스텐류 등)	
자. 형광등	· 직관형(FL), 환형(FCL), 안정기 내장형(CFL), 콤팩트형(FPL),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폐형광등 수거함에 깨지지 않은 형광등만 배출</li> </ul> <p>※ 비해당 품목 : 조명 뜰 및 조명 덮개 등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</p>
차. 전지류	· 수은전지, 산화은전지, 니켈 · 카드뮴전지, 리튬 1차전지, 망간전지 · 알칼리 망간전지, 니켈 수소전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</li> <li>- 제품에서 분리가 불가할 경우 제품과 분리없이 배출</li> </ul>
카. 타이어	· 소형, 중형, 대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비업소,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</li> </ul>
타. 윤활유	· 윤활유(윤활유 용기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</li> </ul>
파. 의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면의류 및 기타 의류</li> <li>· 신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기에 젖지 않도록 의류수거함에 배출</li> <li>- 신발은 반드시 짹을 이루어 배출</li> </ul> <p>※ 비해당 품목 : 여행용 트렁크, 클프가방, 가방 등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</p>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[별표 2]			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[별표 2]		
<u>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</u>			<u>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</u>		
<u>요령</u> (제2조제8호 관련)			<u>요령</u> (제2조제8호 관련)		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	품목	세부품목	배출요령
1. 종이류	○ 신문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기에 젖지 않게 함</li> <li>- 반듯하게 펴고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</li> <li>- 비닐코팅 된 광고지, 비닐류,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</li> </ul>	· 골판지상자 등	· 종이팩 (살균팩, 멸균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닐코팅 부분,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·철핀,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</li> <li>-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</li> </ul> <p>* 비해당 품목 :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,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</p>
	○ 책자, 노트, 달력 종이 쇼핑백, 종이포장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닐코팅표지, 공책의 스프링, 쇼핑백의 비닐끈 등을 제거 후 배출</li> </ul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</li> <li>- 빨대,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</li> <li>- 다른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배출</li> </ul>
	○ 종이팩, 종이컵(우유, 두유, 주스팩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배출</li> </ul>	가. 종이류	· 신문지 · 책자, 노트, 전단지 등 · 종이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</li> <li>- 비닐코팅된 광고지, 비닐류,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</li> </ul>
	○ 상자류(과자포장상자, 기타 골판지 상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닐코팅 부분 제거</li> <li>-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, 철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</li> <li>- 골판지 상자는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</li> </ul> <p>* 벽지 제외</p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별도의 투명·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</li> </ul>
2. 비닐류	○ 일회용비닐류(검은색, 흰색, 푸른색 등)모든 종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별도의 투명·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</li> </ul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닐 코팅된 종이, 공책의 스프링,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</li> </ul>
	○ 필름류 비닐(과자봉지, 라면봉지, 커피봉지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별도의 투명·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</li> </ul> <p>* 비닐 장판 제외</p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</li> </ul>
3, 캔 류	○ 철 캔, 알루미늄 캔(음료수, 통조림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배출</li> <li>-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</li> <li>-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</li> </ul>	· 기타 종이류	· 비닐포장재, 1- 회용비닐봉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,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</li> </ul> <p>* 비해당 품목 :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, 택배전표, 영수증 감열지, 사진용지, 종이호일, 색지, 사용한 화장지, 방수 가공 포스터 등</p>
	○ 기타 캔(부탄가스·살충제 용기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탄가스·살충제·스프레이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</li> </ul> <p>* 내용물이 남아있는 락카·페인트 통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</p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</li> </ul>
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	품목	세부품목	배출요령
4. 병 류	○ 유리병 (음료수병, 기타 병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</li> <li>-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</li> <li>-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</li> </ul> <p>※ 반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(소주 병, 맥주병)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급 가능</p> <p>※ 비해당 품목 : 깨진 유리제품(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),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, 내열 유리제품, 크리스탈 유리제품, 판유리, 조명기구용 유리류, 사기·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</p>	비닐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홀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</li> </ul> <p>※ 비해당 품목 :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, 식탁보, 고무장갑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/ 장판, 둑자리, 섬유류 등(천막, 현수막, 침구류 등)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신고</p>
	○ 농약용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유리,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하고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음료·주류캔, 식료품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</li> <li>-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</li> <li>-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</li> </ul>
5. 스티로 폼	○ 스티로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</li> <li>-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</li> <li>-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밸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</li> </ul> <p>※ 해당 품목 : 농·수축산물 포장 용 밸포스티렌상자,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밸포합성수지 포장재</p> <p>※ 비해당 품목 :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밸포스티렌, 건축용 내·외장재 스티로폼,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</p>	다. 금속캔  라. 유리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타캔류 (부탄가스, 살충제용기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</li> </ul> <p>※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</p> <p>※ 비해당 품목 :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(탁카, 폐인트통 등)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또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수거신청</p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</li> <li>-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</li> <li>-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</li> <li>- 반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음료수병, 기타병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</li> <li>-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</li> <li>- 상표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, 식탁보, 고무장갑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/ 장판, 둑자리, 섬유류 등(천막, 현수막, 침구류 등)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신고</li> </ul>
6. 플라스 틱류	○ PET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</li> <li>-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</li> </ul>	마. 밸포 합성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스티로폼 완충재 (농·수·축산물 포장용 밸포스티렌상자,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</li> <li>-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</li> <li>-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밸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</li> </ul>
	○ 합성수지용 기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PET병 중 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·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</li> </ul>			
	○ 일반가정용 생활용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폐유 용기류는 제외</li> </ul>			
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	품목	세부품목	배출요령
	※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 여된 용기 에 한정	※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 은 제외		포합성수지 (포장재)	<p>처로 반납</p> <p>※ 비해당 품목 :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밸포스티렌, 전축용 내·외장재 스티로폼,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</p>
7. 고철류	○고철(공기구, 철사, 못, 철판 등 쇠붙이)  ○ 비철금속(양 은, 스텐류, 전선, 알루미 늄 샷시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</li> <li>※ 페인트통, 오일통,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</li> </ul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</li> <li>※ 물로 행구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(치약용기 등)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</li> </ul>
8. 형광등	○ 폐형광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</li> <li>※ 깨진 형광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</li> </ul>	바. 합성수지 용기·트 레이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PET 용기(병을 포함한다)</li> <li>· 트레이류</li> <li>· PVC, PE, PP, PS, PSP 재질 등의 용기·트레이류 (분리배출 표시가 된 플라스틱 음료 및 세정용기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착상표,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</li> <li>-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</li> <li>※ 비해당 품목 :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·문구류, 옷걸이, 파일철, CD·DVD 등은 특수 규격마대 배출 / 낚싯대, 전화기, 유모차·보행기 등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신고 / 칫솔 등은 종량제 봉투 배출</li> </ul>
9. 건전지 류	○ 폐건전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정 수거함에 배출</li> <li>-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</li> <li>※ 차량용 배터리는 정비업소로 배출</li> </ul>			
10. 타이어	○ 소형, 중형, 대형	-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	사. 무색 폴 리에틸렌 테레프탈 레이트 (PET)병	· 무색 투명한 (PET) 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(라벨)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</li> <li>※ 설탕,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행군 후 배출</li> </ul>
11. 윤활유	○ 윤활유(용기 포함)	-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	아. 고철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고철(공기구, 철사, 못 등)</li> <li>· 비철금속(알미늄, 스텐류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</li> </ul>
12. 의 류	○ 현 옷, 현 신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의류 수거함에 배출</li> <li>- 신발은 반드시 짹을 이루어 배출</li> <li>※ 솜이불, 베개, 쿠션, 바퀴 달린 가방, 짹 없는 신발 등은 재활용불가</li> </ul>	자. 형광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직 관 형 (FL), 환형(FCL), 안정기 내장형 (CFL), 콤팩트 형(FPL),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폐형광등 수거함에 깨지지 않은 형광등만 배출</li> <li>※ 비해당 품목 : 조명 틀 및 조명 덮개 등은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</li> </ul>
			차. 전지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온전지, 산화온전지, 니켈·카드뮴전지, 리튬 1차전지, 망간전지·알칼리망간전지, 니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</li> <li>- 제품에서 분리가 불가할 경우 제품과 분리없이 배출</li> </ul>

품목	세부품목	배출요령
	수소전지	
카. 타이어	· 소형, 중형, 대형	- 정비업소,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
타. 윤활유	· 윤활유(윤활유 용기 포함)	-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 를 통하여 배출
파. 의류	· 면의류 및 기 타 의류 · 신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기에 젖지 않도록 의류 수거함에 배출</li> <li>- 신발은 반드시 꽉을 이루어 배출</li> </ul> <p>* 비해당 품목 : 여행용 트렁크, 골프가방, 가방 등 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</p>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**3. 미첨부 사유**

-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환경녹지국 깨끗한마포과 김나리
연락처	02-3153-9226